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사유 확인〉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5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8.
3. 회부연월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 ----- ----- ----- ----- ----- -----이 조 및 제78조의5-----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②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한정한다. 이하 같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5(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사유의 확인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속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토의견

징계(懲戒)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이나 의무를 위반한 구성원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징계의 종류·절차 및 효력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의 6가지가 있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어 있으며,¹⁾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종류에 따라 공직 배제/퇴직급여 감액 등 신분상·보수상 효력이 발생하게 됨.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구분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신분 효력	· 공직 배제 ·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공직 배제 ·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1계급 내림 + 정직3월 · 승진제한 (3월+18월)	· 처분기간 중 직무종사못함 · 승진제한 (정직기간+18 월)	· 승진제한 (감봉기간+12 월)	· 승진제한 (6월)
보수 효력	· 퇴직급여 1/2 및 수당 1/2 감액	· (금품비위) 퇴직급여 1/4 및 수당 1/4 감액	· 3월간 보수전액 감액 · 승급제한	· 처분기간 중 보수전액 감액 · 승급제한	· 보수1/3(연봉 자 4할) 감액 · 승급제한	· 승급제한

자료: 인사혁신처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현행법은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이 공무원 관계의 변동을 통하여 징계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퇴직을 유보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의식 확보와 공직윤리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²⁾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의원면직 제한 제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 제도 취지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 목적으로 함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하도록 하고 일정 징계사유 존재 시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형사기소, 중징계 의결요구, 수사·감사 중 여부를 확인*

* 감사원,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회신)

-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경징계 사유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원에 따라 면직 가능
- 대상자에게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중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비위로 수사·감사·형사기소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 제한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국외 파견의 경우에도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연시키거나 도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³⁾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국외 파견에 대해서도 의원면직 제한 제도와 유사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비위 공무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음.

다만, 의원면직 제한 제도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무원 관계가 유지되는 국외 파견의 경우에

3) 김은영, 「최혁진 국회의원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 금지”... 「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원주신문』, 2025. 11. 18.,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81>.

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의원면직 제한 제도는 퇴직 이후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직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국외 파견 근무자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파견 기간 중에도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징계 절차의 진행에 제도적 제약은 크지 않다 할 수 있음.

또한,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이 제한되거나 이미 파견 중인 경우에도 복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공무원 파견의 제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파견의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 중에 있는 경우

②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

1. 직위해제·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국외 파견근무 예정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수사기관 등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원면직과 달리 파견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국외로 파견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므로, 국외 파견 전에 수사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징계사유 등을 조회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